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
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김윤덕 (국토교통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개정이유

「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3조제1항제4호의 “그 밖에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”을 시행령에 명시하고, 기존 업무 중 위탁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업무와 새롭게 추가된 업무의 위탁근거를 명확하게 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을 위한 지원시책 구체화(안 제22조 개정)

법 제23조제1항4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과 시·도지사가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지원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

나. 업무의 위탁 규정 현행화(안 제25조 개정)

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과 시·도지사가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과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에 대한 위탁 근거를 마련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6. 01. 00. ~ 02. 00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의 제목 “(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자)”를 “(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시책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① 법 제23조제1항제4호에서 “그 밖에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협의체 운영
2.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센터 운영
3.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국민 수용성 증대를 위한 세미나, 전시회 등 개최

제25조제1항제12호를 제14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2.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시책을 추진하는 업무
13.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2조(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자) <신 설>	제22조(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시책) ① 법 제23조제1항제4호에서 “그 밖에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.
(생 략)	1.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협의체 운영
	2.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센터 운영
	3.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국민 수용성 증대를 위한 세미나, 전시회 등 개최
	②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
제25조(업무의 위탁)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	제25조(업무의 위탁) ①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11. (생 략)	1. ~ 11.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12.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시책을 추진하는 업무
<신 설>	13.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전

<u>12.</u> (생략) ② · ③ (생략)	<u>문인력의 양성 지원</u> <u>14.</u> (현행 제12호와 같음) 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국토교통부 도심항공교통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1 - 4278